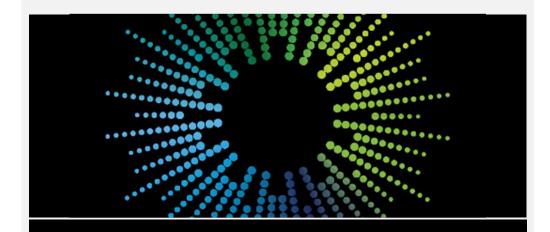
Deloitte.

Korea | Tax | 10 January 2023



Creating the future, together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12 월

• 예규·판례

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 2022 서 7311, 2022.12.15)

■ 처분의 경위

•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CCC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분할법인은 분할법인의 비영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하고, 2016.4.12. DDD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원으로 평가

한 후 이를 청구인들을 포함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에게 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합계 OOO(청구인 aaa OOO, 청구인 bbb OOO)를 배정받은 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합계 OOO 원(청구인 aaa OOO 원, 청구인 bbb OOO 원)으로 보아 2016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

- OOO 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6.부터 2020.9.17.까지 분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분할대가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 원으로 평가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금액을 합계 OOO 원(청구인 aaa OOO 원, 청구인 bbb OOO 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6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시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 상증세법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는 평가대상인 비상장주식이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 ✓ 정점주식의 평가기준일 2016.4.12. 현재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전의 법인 내지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점
 - ✓ 2017.2.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는 후단에서 "「법인세법」제 46 조의 3, 제 46 조의 5 및 제 47 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바, 이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OOO, 같은 뜻임)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나. 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5 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 ㅇㅇ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 전 6260, 2022.12.13)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1995.4.7.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4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조제 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2014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규모기준 초과로 2017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2017~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20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2.2.16.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2022.2.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2017~2020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부여받은 정부지원과 혜택이 일시에 중단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는 것인 점
- ✓ 국세청 예규 및 개정세법 해설(2010)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 조 제 2 항은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최초로 중소
 기업을 졸업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으나 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동안 졸업유예를 적
 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까지 4 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
 는 점
- ✓ 청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제 5 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2011~2014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14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다.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1165, 2022.12.13)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운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다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이 각 부문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회사와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로 분할을 할 계획임에 따라 신청법인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중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주식 외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 외 승계 자산 및 부채 세부 내용 〉

구분	내용
현금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분할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취득.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매입.신규사업 투자.기업 인수 등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미수금	분할대상사업부문이 타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
토지 및 건물	분할대상사업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및 부속토지
이관 인원 관련 자산·부채	분할대상사업부문 소속 임직원 관련 자산 및 부채(이관 인원의 주택자금대출.연차수당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근속 충당부채)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되는 인원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중 제 46 조 제 2항 제 1호 가목 및 나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 부문과 관련된 자산 . 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 46 조제 2 항제 1 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 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 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5, 2022.12.19)

■ 질의

(사실관계)

△△△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독일에 본점★을 둔 손해보험회사로 글로벌 사업보험, 특수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

* 한국, 벨기에,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영국, 스페인 등에 해외지점 설치 질의법인은 '17.1.27. 설립되어 기업손해보험 및 재보험사업 개시

질의법인은 본점 및 해외지점으로부터 사업 영위에 필요한 경영지원, 보험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이를 납부한 사업연도 에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

질의법인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52 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17~'21 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22 년에 모두 환급받음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설)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22 년)

(을설) 과거 부가가치세 과오납 사업연도 귀속 ('17 년 ~ '21 년)

■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 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 11 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타당 (서면-2022-법인-2191, 2022.12.30)

■ 질의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7 월 舊 ㈜〇〇〇〇*(可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는 지주회사인 舊 ㈜△△△△ △△△(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됨

*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결손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76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최근 1 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 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하여 합병 가액 산정

합병 후 舊 ㈜△△△△△△(합병법인)는 ㈜○○○로 상호를 변경함
'22.4월 ㈜○○○(합병법인)는 질의법인(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로 물적분할함

* 舊 ㈜〇〇〇(피합병법인)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 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질의법인(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100% 취득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70%를 특수관계 없는 제 3 자에게 매각할 예정

지분을 매각할 경우 '22.4 월에 실시한 분할은 비적격물적분할 1)에 해당되고, '20.7 월의 합병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2)에 해당됨

- 1) 법§46②(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2) 법§44 의 3③(1):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 처분 및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질의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및 세무조정사항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적격합병시 舊 ㈜〇〇〇〇(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26 억원을 승계하였으나 합병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질의내용)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회신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제 13 조 제 1 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 44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 44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 3 항 제 1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 80 조의 4 제 4 항, 제 5 항 제 2 호

및 제 6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당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존재하였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하여 같은 법 제 44 조의 3 제 3 항 제 1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공제 후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